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 인권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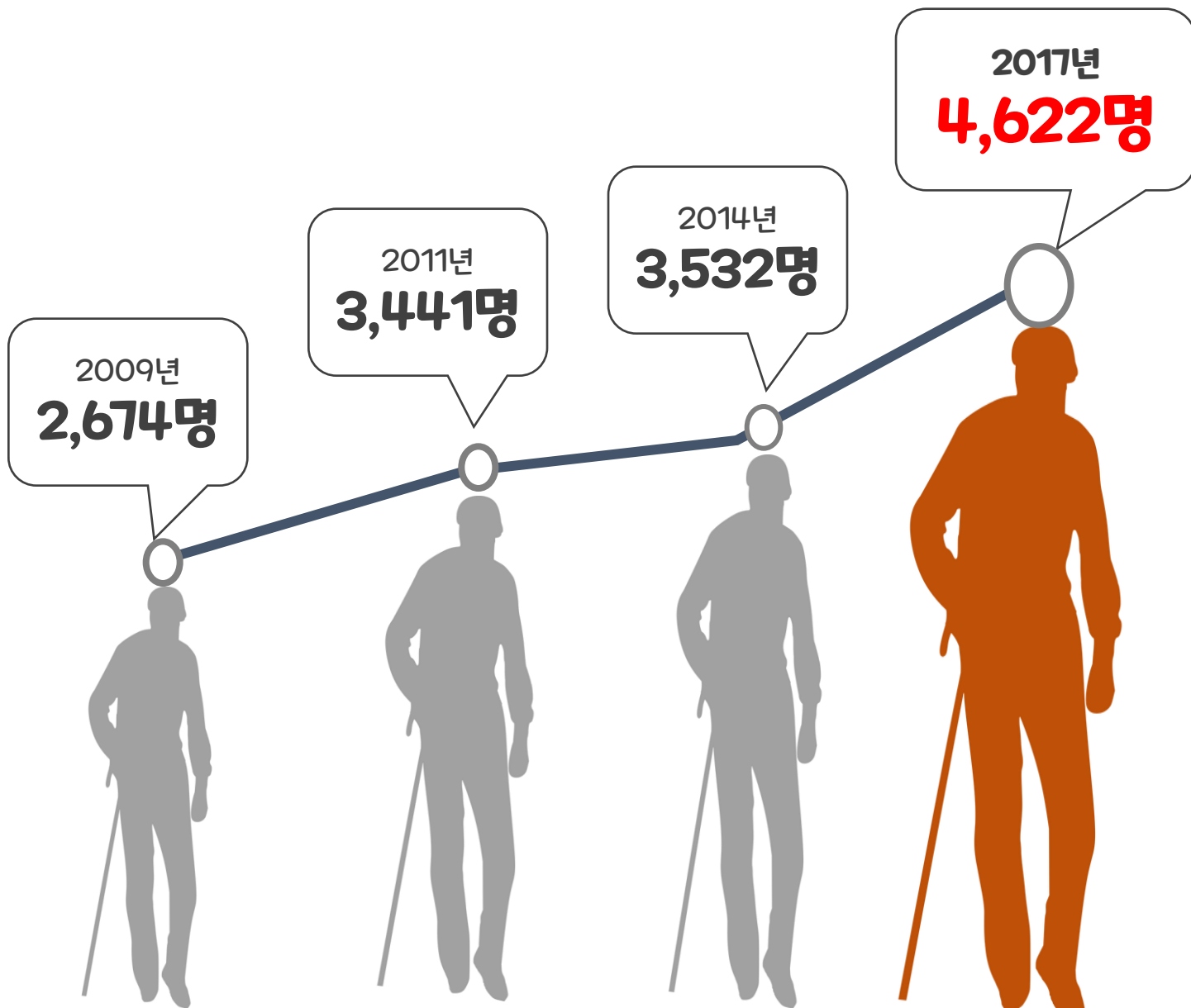




노인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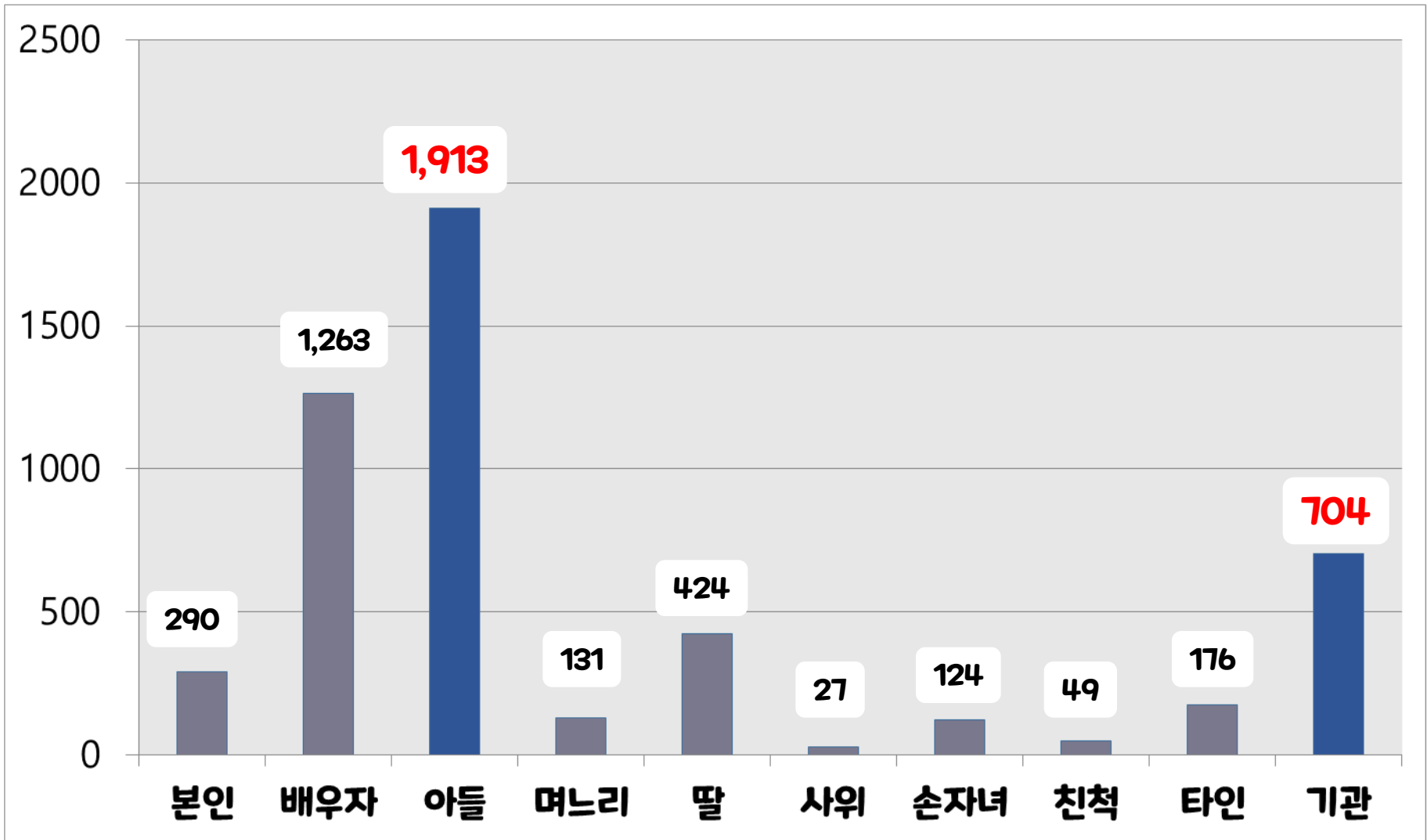


노인학대



학대 행위자 유형

* 출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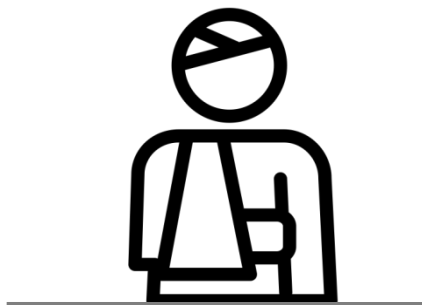


방임



유기

노인학대 법적처벌



7년 또는
7천만원



5년 또는
5천만원



3년 또는
3천만원

노인학대 법적처벌



1년 또는
1천만원



오백만원



3년 또는
3천만원

신고

Why? 관심을 가져야 할까?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 하도록 의무화 됨**



SECRET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신고.상담



정보파악



이관



사례접수
현장조사



노인학대
사례판정



평가,서비스
계획 및 제공



사례종결
사후관리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129

1577-1389